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56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감독의무에 대한 업무관련성 명시 ...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5.

다. 회 부 일 :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되,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1.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감독의무에 대한 업무관련성 명시

개정안은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감독의무의 범위를 업무에 관한 것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u>상당한</u>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양벌규정) ----- ----- ----- ----- ----- ----- ----- ----- -----해당 업 <u>무에 관하여 상당한</u> ----- ----- -----.

양벌규정은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예방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25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2007년 헌법재판소는 영업주의 면책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그 후 입법개선이 추진되어 현재는 대다수 법률에서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국회 입안기준에 따르면 양벌규정 면책규정의 규정방식은 일반적으로 단서조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²⁾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대다수 법률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문구로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관련성 있는 주의·감독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책임범위를 명확히

1) 종업원의 업무 관련 위법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7년 이후 일관하여 면책규정 없는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함.

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p.802.

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